

「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·장애인체육관」 운영
민간위탁(재위탁) 보고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장 장애인복지시설(장애인종합복지관·장애인체육관)의 위탁 기간 만료('23.3.14.)가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·장애인체육관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 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(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-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2) 필요성

-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, 책임성 담보가 가능한 민간 위탁 추진 필요

3) 위탁사무의 내용

-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·장애인체육관 운영 및 관리
(시설 운영관리, 재정 및 조직 운영, 인적 자원 관리,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)

다. 위탁시설 개요

- 1) 시 설 명 :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·장애인체육관
- 2) 위 치 : 구미시 공원로 340 (형곡2동)
- 3) 시설규모 : (복지관)연면적 2,976㎡ (체육관)연면적 4,033㎡
- 4) 주요시설

가) 장애인복지관 :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

층 별	연면적	주요시설
계	2,976㎡	
지하1층	897㎡	목욕탕, 미용실, 노래방, 탁구장, 요리활동실
지상1층	1,030㎡	상담실, 성인·소아재활운동실, 주간보호실 등
지상2층	1,049㎡	기초학습실, 언어재활실, 도서실, 강당 등

나) 장애인체육관 :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신체적 기능회복, 재활 증진

층 별	연면적	주요시설
계	4,033㎡	
지하1층	1,141㎡	프로그램실, 식당 등
지상1층	1,990㎡	체력단련실, 경기장, 무대 등
지상2층	902㎡	관람석, 프로그램실, 휴게실, 사무실 등

<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·장애인체육관 운영 현황 >

- ◆(운영주체) 사)한국교통장애인협회(회장 김락환)
- ◆(2022. 예산지원) 인건비 및 운영비 2,367백만원 (도비2.5%, 시비 97.5%)
- ◆(사업내용) 교육재활사업, 생활자립지원사업, 직업재활사업, 사회적응교육, 생활 및 특수체육, 체력증진 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
- ◆ 시설 현황

시설명	시설장	개관일	규 모	종사자 수	예 산	비고
장애인 복지관	김휴진	2001.02.21.	지하1층, 지상2층 (부지 9,961㎡, 건물 2,976㎡)	39명 (관장 1,사무국장 1, 팀장 7, 직원 30)	1,487백만원 (도17 시1,470)	
장애인 체육관		2013.12.13.	지하1층, 지상2층 (부지16,645㎡, 건물 4,033㎡)	14명 (관장 1(겸직),부장 2, 직원 11)	880백만원 (도 23 시857)	

라.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5년간 * 2023. 3. 15. ~ 2028. 3. 14.

마. 위탁방법 : 위·수탁자 공개모집, 위탁체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

바. 위탁 소요예산 : 연간 2,509백만원 정도('22년 기준)

- (보조금) 2,367백만원, 도비 2.5% 시비 97.5%
- (자부담) 142백만원

사. 운영체 신청 자격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 분야에 대한 공신력, 재정 능력,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갖춘 법인
- 현재 운영하는 인력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어야 함.
(단, 시설장은 협의 가능)

아. 수탁자선정 세부 일정

- 공개모집 및 신청 접수 : 2022. 11월 중
-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: 2022. 12월 중
- 위 · 수탁 협약 체결 : 2022. 12월 중

4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·장애인체육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장애인 관련 시설의 업무와 운영은 전문성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나 기관에 맡겨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. 향후, 집행부에서는 수탁 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 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